

[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-60호]

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(유치원의 설립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(유아배치계획)에 의거, 【2020학년도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】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5일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



경기도 고양시 「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」 공고

1. 목적

- 취학희망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및 학습권 보장
- 적정규모의 유치원 신·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제고
- 취학권역 내 균형있는 유아교육 발전 도모, 공·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

2.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: [붙임1] 참조

3. 설립계획 승인 신청 및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

- 근거: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
- 대상: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 내 신규 설립계획 승인 신청자
- 접수기간: 2020년 3월 25일 ~ 2020년 3월 31일
(평일 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접수방법: 방문 제출(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), 신분증 지참
- 접수장소: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층, 경영지원과 성과협력팀
- 제출서류: [붙임2]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신청서(첨부 서류 포함)

○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

- ① 신설인가 가능 취학권역 내 도시계획상 유치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와, 타 법령* 등에 의해 유치원용지가 분양되는 경우 우선권 부여

*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각종 특례법 등 도시·택지개발관련 법령

- ② 상기 ①의 유치원용지 우선권 부여 후, 잔여 정원에 대하여 “추첨”의 방식으로 설립예정자 순번을 결정

(단, 취학권역별 인가가능 잔여정원이 없을 경우 설립계획 승인 불가)

※ 추첨을 실시하는 경우, 추첨 관련 일정은 개별통보

♠ 추첨 방법

- 추첨일시 및 장소 :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마감 후 공고(개별 통보)
- 유의사항 : **설립계획 승인 신청자 본인 참석**

○ 기타 유의사항

- ① 유치원 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후 심의 결과 통보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(약 45일)되며, **접수기한(2020.03.31.)까지 교육환경평가 검토 결과가 「적합」으로 회신된 건에 한함**
- ②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, 접수기한 (2020.03.31.)까지 최종 보완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
- ③ 신청자격 부적합자(교육환경평가 검토결과 부적합 포함)와 설립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자동으로 접수 취소
- ④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(☎031-900-29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1.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 1부.

붙임2. 유치원 설립계획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 1부.

고양교육지원청 「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」

취학권역	행정동	인가가능 여부	인가가능 정원	비고
덕양1	주교동, 성사1동, 성사2동	×	×	
덕양2	원신동, 신도동, 효자동	×	×	
덕양3	흥도동, 창릉동	×	×	
덕양4	고양동, 관산동	×	×	
덕양5	화정1동, 화정2동, 능곡동	×	×	
덕양6	행신1동, 행주동	×	×	
덕양7	행신2동	×	×	
덕양8	행신3동	×	×	
덕양9	화전동, 대덕동	○	253명	고양 향동지구 및 덕은지구 개발지역 내 신설만 가능
일산동1	식사동	×	×	
일산동2	풍산동	×	×	
일산동3	고봉동, 중산동	×	×	
일산동4	정발산동, 마두1동, 마두2동	×	×	
일산동5	백석1동, 백석2동, 장항1동, 장항2동	×	×	
일산서1	탄현동	×	×	
일산서2	일산1동, 일산2동, 일산3동	×	×	
일산서3	주엽1동, 주엽2동	×	×	
일산서4	대화동, 송포동	×	×	
일산서5	송산동	×	×	